

# 미사용자산 및 유휴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상담실 백종훈 차장

경기침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유형자산을 취득하고도 사용하지 못하거나, 이미 취득한 유형자산의 가동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취득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자산이나 가동을 중단한 자산의 회계 및 세무처리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기업회계상 미사용자산 및 가동중단 자산도 감가상각하고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함

현행 기업회계는 경제상황으로 인하여 유형자산을 취득한 뒤 사용하지 못하고 있거나, 또는 사용하던 자산을 가동중지하는 경우에도 감가상각을 하되 감가상각비는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미사용 자산 또는 가동중지 자산도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인데, 따라서 미사용 자산, 장기간 가동중지 자산, 단기간 가동중지 자산 등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감가상각을 하여 원가를 배분하는 회계반영을 하면 된다.

### ◇ 일반기업회계 제10장 유형자산

10.35 내용연수 도중 사용을 중단하고, 처분예정인 유형자산은 사용을 중단한 시점의 장부가액으로 표시한다. 이러한 자산에 대해서는 투자자산으로 재분류하고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손상차손 발생여부를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한다. 내용연수 도중 사용을 중단하였으나, 장래 사용을 재개할 예정인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되, 그 감가상각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 세무상으로는 일시적 유휴자산에 대해서만 감가상각 인정함

법인세법은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건설중인 것,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일시적 유휴설비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인정한다.

하지만 철거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산 및 취득후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는 자산은 일시적 유희설비에 포함시키지 않아 감가상각을 인정하지 않는다.

즉, 다시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단기적으로 가동중지에 있는 유희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인정하고, 자산을 철거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취득후에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미사용 자산에 대해서는 기업회계와는 달리 감가상각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회계에 따라 감가상각을 반영한 미사용자산은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② 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유희설비를 제외한다)
2. 건설 중인 것
3.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② 영 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는 유희설비에는 다음 각호의 기계 및 장치등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용중 철거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계 및 장치 등
2. 취득후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관중인 기계 및 장치 등

#### ♣ 서면2팀-1107, 2006.06.15

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기계 및 장치 등을 철거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입하여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한 감가상각대상 자산이 되는 유희설비로 보지 않는 것임.

#### ♣ 서면2팀-1971, 2005.12.05

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생산설비 등이 일시적으로 가동중단상태에 있으나 상시 재가동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희설비로 보아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포함하는 것이나, 질의한 자산 등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일시적인 가동중단상태에 있는지, 상시 재가동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지의 여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